

---

# 「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거부」에 따른 대응 및 협조사항

---

'18. 4. 11[水]



# 1

## 수거상황 및 조치경과

### □ 수거상황

- ◇ 4.1일 수도권 중심으로 수거업체가 폐비닐 등 유가성이 낮은 재활용품 수거 중단을 통지하면서 수거현장 혼란 발생
- ◇ (수도권) 경기도는 정상 수거로 전환 중에 있고, 서울시는 정상화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나, 모든 수거중단 지역에 대해 처리대책 수립
  - 인천시는 일부수거 재개, 기존업체 협상, 자체처리 방안 수립 중
- ◇ (기타지역) 충남·울산 등 일부지역 문제발생 이후 처리대책 수립 등 대응 중

- (서울시) 3,132개 단지 중 수거중단 1,610개 단지에 대해 293개 단지는 민간위탁 수거계획을 수립, 1,317개 단지는 구청 직접 수거 중(4.8일 기준)

\* 수거 중단 1,610개 단지 중 1,262개는 정상 수거 중이며, 나머지 348개 단지는 수거계획은 있으나 현장수거가 아직 완료되지 않는 상황

- (경기도) 수거중단 발생지역(8개시)에 대해 모두 지자체 직접수거 계획 하에 3개시(고양·과천·수원)는 조기 정상화 완료

- 나머지 지역(김포·용인·화성·군포·오산)도 직접 수거 진행 중

- (인천시) 수거중단 발생 8개 자치구내 604개 단지에서 수거 중단

- 중단지역 일부 수거 재개 중이며, 적체 해소가 완료되지 않아 기존업체와 협상 진행, 자체 처리방안 마련 중

- (기타 지역) 부산·대전·충남·전남·울산 등에서도 수거거부 발생 또는 업체에서 수거중단 통보, 해당 지자체는 수거계획 수립 등 대응 중

- 164개 시·군·구 중 12개 지자체 발생, 5개 지자체는 발생 우려

### < 수도권 외 기타 지자체 동향 및 대응현황 >

구 분	동향 및 대응현황
부 산	1개구(7개단지) 수거거부 → 지자체 직접수거 및 재계약 검토
대 전	5개구(225개단지)에서 4.16일부터 수거거부 예정 → 단가조정 계약협의를(4.10)
울 산	4개구(47개단지) 수거거부(4.9) → 지자체 직접수거 및 재계약 검토
충 남	서산(66개단지), 당진(30개단지), 금산(1개단지), 홍성(48개단지), 수거거부 → 지자체 직접처리 중
전 남	화순(25개단지), 나주(6개단지) 수거거부 → 화순(수거업체 협의, 4.11), 나주(지자체 직접수거중)

## 2

## 그간 조치경과

- 17개 시·도 대상 수거중단 상황파악 및 긴급해소 조치, 일일상황 보고 등 요청(3.26, 3.30, 4.5, 4.6, 4.7)
  - 시·도별 공식 일일상황 보고, 조치계획 제출 등 미 조치
- 환경부 기초지자체 대상 유선조사 및 현장점검 실시
  - 수도권 40개 시·구 대상 현장상황 직접 유선 파악(4.4~)
  - “현장점검반” 구성(38개조 76명), 수도권 시·구별 현장 확인(4.5~)
    - \* 전국 기초지자체(228개) 대상 일일상황 점검 병행 추진 중(4.7~)
  - 장·차관 수거·선별 업체, 아파트 분리배출 현장점검(4.2, 4.4, 4.7, 4.8)
- 비상수거 조치를 위한 지자체 점검 회의 개최
  - 수도권 부단체장 회의(4.5, 장관), 전국 시·도 환경국장 회의(4.6, 차관)
- 수거 정상화를 위한 수거·선별업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
  - 선별업체(4.2), 수거업체(4.4), 재활용단체(4.5), 재활용 활성화 협의체(4.6) 등
    - \* ‘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’(52개 재활용단체 연합) 수거정상화 성명서 발표(4.6)

### < 업계 간담회 추진 경과 >

일 자	내 용
4.2(월)	○ 선별업체 간담회 개최 :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조치방안 논의
4.3(화)	○ 폐비닐 긴급 현장대책반 구성·운영 : 48개 선별업체 점검
4.4(수)	○ 재활용시장 개척 TF 회의 : 재활용제품 기술개발, 수요처 확대 논의 ○ 민간 수거업체 간담회(차관) : 수거업계 애로사항 청취
4.5(목)	○ 재활용 업계별 간담회 : 업계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 등 ○ 제지업계 간담회 : 추가 폐지수입 자제 및 실태조사 등 협의
4.6(금)	○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협의체(차관) : 업계·지자체·시민단체 등의 요구사항 및 개선방안 논의
4.7(토)	○ 유관기관 간담회 : EPR 제도운영 개선방안 등 협의

◇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는 민간업체가 전담하고 있어, 국내·외 복합적 상황변화(수익 악화 등)에 따른 수거중단 사태 대응에 취약한 구조

### <1> 공공 관리 부실

- 공동주택 재활용품(폐지·폐비닐 등)은 공공관리 사각지대로 방치
  - “생활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책임” 이나 민간이 수거하는 공동주택은 관리영역에서 제외(기본 현황도 미 파악)
    - \* (지자체 책무) 관할구역 생활폐기물 처리와 처리방법 개선,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(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, 제14조제1항)
  - 일부 기초지자체(시·군·구)는 업체 수거중단 발생에도 아파트-업체간 문제로 인식하여 적극적 문제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음

### <2> 재활용시장 침체 지속

- 제반비용 상승, 재활용품 가격 하락 등으로 재활용 업계 수익성 악화
  - (재활용업계) 폐비닐 고품연료제품(SRF\*) 가격하락, 재활용(주차블럭, 빗물받이 등) 제한 등으로 수익 저하
  - (선별업계) 분리배출 미흡으로 잔재물 과다발생(약 40%) 및 처리비용 상승\*, 인건비 인상 등으로 비용은 증가, PET 가격 등 하락
    - \* 소각비용/톤: 15만원('17) → 20만원 이상('18)
  - (수거업계) 수급 불안정 등으로 폐지가격 등 하락\*, 수익 감소
    - \* 국내에서 폐지는 공급 부족 상황,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 등락을 반복(업계는 금번 급락은 작년 가격이 급등한 이후 단기조정 과정으로 판단, 1~2개월내 해소예상)
    - 폐골판지: 80원/kg('15~'16) → 130원/kg('17) → 90원/kg('18.3)
- ☞ 경영 악화로 가장 유가성이 낮은 비닐류에 대한 반입 거부(선별업체), 선별업체에 납품하던 수거업체의 아파트 수거거부로 연결

◇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**지자체별** 단지내 **적치 재활용품 우선 수거·처리** 및 사태 발생 대비 선제적 해결을 위한 **사전예방 시스템 구축**

### <1> 지자체 : 수거 정상화 등 역할이행, 사전예방 활동 강화

□ (사태발생 시·도) 수거업체의 채산성 제고를 위해 아파트-개별수거업체 간 계약 갱신이 필요하나, 지자체가 개별 업체별 협의를 유도하는 데에는 시간 소요

\* 수거업체 단체는 세대당 지급하는 비용을 800~1000원/월 수준으로 인하시 수거재개 의사

○ 수거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계약단가 인하를 통한 수거재개를 우선 독려하되, 협의 지연 시 지자체가 직접 수거·처리\*

\* 지자체 직영 수거, 민간수거업체 별도계약, 기존 대행업체 처리

#### < 유형별 선제대응 사례 >

조치유형	지자체	대응 조치	
		시점	주요 내용
계약 단가 인하	하남시	'18.4월	- 아파트-업체간 재계약 유도(9개 단지 완료)
직접수거	남양주시, 하남시 광주시(경기)	'18.4월	- 유가성 품목은 민간업체 수거 - 페비닐·페스티로폼 등은 지자체 직접수거
민간업체 별도계약	청주시	'18.3월	- 페비닐·페플라스틱 전용수거 대행계약 체결(9억원)
기존 위탁 업체 처리	안양시 파주시	'18.4월	- 기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활용 수거

○ 수거 된 폐기물 보관 공간 확보 어려움을 위한 공공선별장, 민간 선별장 재활용업체, 수도권매립지, 한국환경공단 창고 등의 부지 공간 최대 활용

□ (사전예방 활동 강화) 수도권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, 나머지 지역도 실태점검, 상황반 운영 등 비상 대응체계 구축

○ 관할구역의 공동주택 수거현황 실태점검 등 상황반 운영(즉시)

○ 수도권 사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 현황 파악 및 공동주택 민간 수거 보고체계\* 구축 등 사전예방 및 위기대응 보고체계\*\* 구축(4월 중)

\* 업체 및 계약 현황, 민간수거업체 수거중단 시 사전 통보(3개월 전), 아파트 관리사무소 즉시 통보(지자체) 등 통보의무 부여(관련근거 마련 전까지 권고사항으로 운영)

\*\* 수거중단 시 환경부·지자체 등의 비상대응체계 구축·운영 등(붙임3, '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중단 시 대응 매뉴얼안' 참조)

- 공동주택 민간 수거거부 등 비상시 직접 또는 위탁 수거·처리가 가능한 대응체계 사전 마련(4월 중)
- 유가성이 낮은 수거 취약 품목(폐비닐 등)에 대한 공공처리 강화 (지자체 직접처리 등), 지역 내 재활용 기반(선별장 등) 확충·개선 검토

---

## 〈2〉 정부 : 재활용 안정화 긴급조치

---

- (선별업체 소각비용 저감) 잔재물 처리비용 저감\*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중)
  - \* 선별 잔재물(사업장폐기물)을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(민간 선별업체 잔재물 3,644톤/일 발생 → 생활폐기물로 처리 시 최대 7.3억원/일 절감)
- (SRF 업계 부담경감) 품질·시설검사 주기 완화 방안 검토
  - 품질·시설 검사 등 연 15회의 검사·점검 등을 연 5~6회로 조정, 품질표시검사 연 2회 → 1회로 조정(약 7억5천만원 저감)
  - \*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('18)
- (폐지 수급안정화) 제지업계 긴급매수\* 및 비축(환경공단) 등으로 단기 적체된 폐지물량을 해소, 폐지가격 안정 및 수거업체 수익개선 유도
  - \* 5개 제지회사는 폐지 시장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체된 폐지 긴급 매수키로 합의(4.9)
- PET는 가격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, 적체 우려시 비축사업 추진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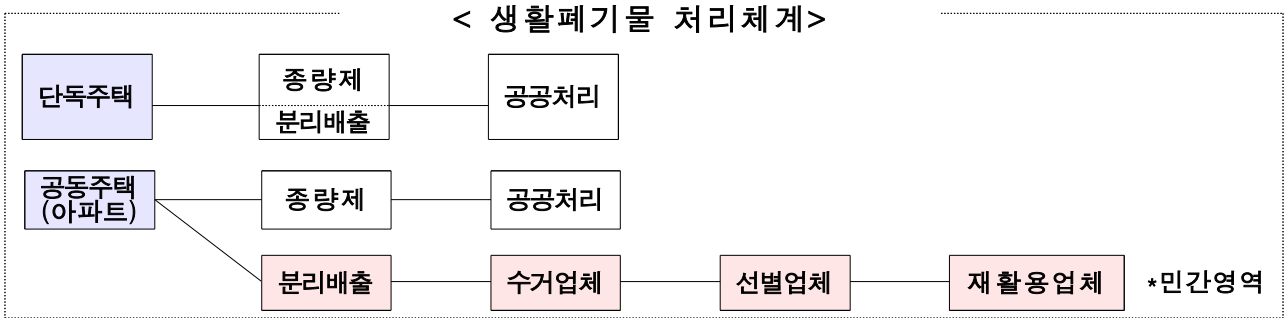
## 〈3〉 정부·지자체 : 분리배출 홍보 교육 등

---

- 지자체 주도의 분리배출 교육·홍보 집중추진(~6월)
  -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위법 공지문 제거 및 적정 분리배출 요령 안내·교육, 분리수거 현장 모니터링 추진
- 환경부·유관기관·시민사회 공동 캠페인 및 방송·라디오·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집중추진(4월~)
  - 주민과 함께하는 분리배출 홍보 콘텐츠 개발, 캐치프레이즈 공모, 스마트폰 안내 앱(App) 개발·보급 등 추진
- 환경부 “현장점검반”의 수도권 및 전국 기초 지자체 일일상황 점검 협조 및 조사통계 자료 신뢰성 제고에 협조 요청

## 붙임 1

# 재활용품 수거·재활용 체계 개요



### □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책무

- 지자체는 관할구역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 파악,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시설 설치·운영(법 제4조제1항)
- 환경부는 지자체 책무이행을 위한 기술·재정적 지원 및 조정업무 수행(법 제4조제4항)

### □ 주거형태별 재활용품 수거·재활용 체계

- (단독주택) 생활폐기물을 모두 지자체에서 관리(수거·선별)
- (공동주택) 지자체는 종량제를 실시하고, 재활용품은 아파트-수거업체간 민간 자율계약\*으로 이원화되어 운영

\* 수거업체에서 아파트 주민협의회 등에 세대당 1,000~2,000원(월) 지급

### □ 수거·선별·재활용 업체별 수익구조

- (수거업체) 폐지·폐비닐·플라스틱·금속류 등을 일괄로 수거하나, 주로 유가성 높은 폐지 등 판매로 수익 창출

\* 폐비닐은 무상 또는 일부 운송비를 보조받고 선별업체에 제공(적자구조)

- (선별업체) 플라스틱류, 폐비닐 등을 선별하여 재활용업체에 판매, 주로 폐PET 등 판매로 수익 확보, 잔재물은 매립·소각 처리

\* 폐지의 경우 전문 선별업체에서 선별·압축 후 제지업체 공급

- (재활용업체) 선별된 폐비닐로 고품연료제품(SRF) 제조·판매(70%), 폐PET는 파쇄·세척하여 섬유 제조업체 등에 판매(내수 90%)

◇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**지자체별로 아파트 미수거 재활용품은 우선 수거·처리**토록 하고, 이를 지원하기 위한 **정부차원의 긴급대책 추진**

**1 지자체 수거 정상화**

- 지자체별 아파트 수거실태 전수조사를 통해, 아파트-수거업체 간 계약단가 인하 등 계약갱신 독려
- 협의 지연 시 지자체 직접 수거·처리\*
  - \* 지자체 직영, 민간수거업체 별도계약, 기존 위탁업체 처리
- 수거 후 보관은 민간·공공 보유시설\* 최대한 활용
  - \* 공공선별장, 민간선별장·재활용업체, 수도권매립지, 한국환경공단 압수물보관창고·농촌폐비닐사업소 등

**2 재활용시장 안정화 긴급조치**

- 잔재물 처리비용 저감 관련 규정 개정(~4.13)
- 고품연료제품(SRF)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정 개선
  - \* 품질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경감, 검사주기완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
- 폐지 긴급매수·비축 등 폐지 수급 안정화
  - \* 5개 제지회사와 긴급 매수키로 합의, 매수물량 협의 중

**3 분리배출 체계 전환**

- 지자체·시민사회 협력 하에 분리배출 집중 교육·홍보 및 모니터링 추진(~6월)
- 공동 캠페인 및 매체별 홍보 강화(4월~)

**4 종합대책 마련**

- 지자체·업계·시민단체 참여 협의체 구성(4.6~)
- 재활용 종합대책 마련(4월말)
  - \* (수거체계) 공동주택 재활용품 실적보고 근거 마련('18.上)
  - \* (제도개선) EPR 개선, 비닐봉투무상제공 금지업종 확대,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등
  - \* (실천운동) 1회용품 사용저감 운동(정부: 5월 ⇄ 민간: 6월~)
  - \* (기술개발) 물질재활용 촉진 재활용 기술 R&D
  - \* (홍보교육) 중앙정부·지자체·시민단체 합동 환경교육



## 1. 목 적

- 이 매뉴얼(안)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, 수집·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수거 중단 등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기본방침

-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 매뉴얼(안)을 참고하여 관할구역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중단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되거나,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그 이행의 통일성과 업무처리 방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,
-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중단은 유형별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동 매뉴얼(안)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 할 수 있음

## 3. 관계법령 및 규정

- 「폐기물관리법」
  - (국가의 책무) 지자체장이 폐기물처리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·재정적 지원, 지자체간 폐기물처리사업 조정(법제4조제4항)
  - (지자체 책무) 관할구역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 파악,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(법제4조제1항)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  -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(환경부 훈령)

#### 4. 적용 범위

-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 공동주택

#### 5. 위기상황의 구분

##### □ 대형 위기상황

- 2개 이상의 광역시·도에서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중단 등으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

##### □ 중형 위기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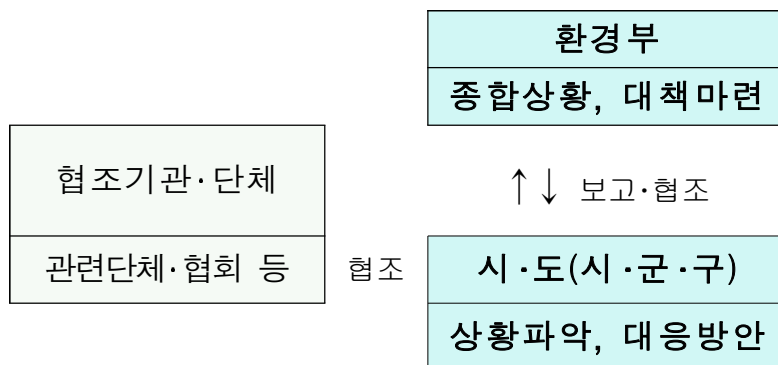
- 광역시·도내 2개 이상의 시·군·구에서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중단 등으로 광역시·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

##### □ 소형 위기상황

-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중단 등으로 시·군·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

#### 6. 위기상황 대응 지침

- 위기상황 구분에 따라 정부,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「상황반」 구성·운영 등 상황파악, 보고체계 유지 등 총괄대응



□ 위기 상황별 대응지침

구 분	대응지침
수거중단 예고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·군·구별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중단예고 동향 파악</li> <li>· 민간수거업체 수거중단 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사전 통보(3개월 전)</li> <li>·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</li> <li>※ 관련근거 마련 전까지 권고사항으로 운영</li> <li>- 필요시 지자체 현장 확인을 위한 「현장 점검팀」 운영</li> <li>- 시·도 등 보고 및 기관 대응방안 강구</li> </ul> <p>[조치사항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거중단 사전 예방 등 긴급대응방안 수립·시행</li> <li>■ 수거중단 예고된 수거업체와 협의, 아파트·수거업체 간 단가조정 등 재계약 유도</li> <li>■ 수거중단 예고 아파트에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집중 홍보</li> <li>■ 수거중단 발생 대비 단지 내 적치 재활용품의 수거 계획 마련</li> <li>· 지자체 직접수거, 대행업체·별도 위탁업체 활용 검토</li> <li>· 긴급 수거된 재활용품의 보관처리 계획 검토 등</li> </ul>
수거중단 발생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·군·구별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중단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</li> <li>- 지자체 현장 확인 및 대응을 위한 「대책 상황반」 및 「현장 조사반」 운영</li> <li>- 시·도 등 관계기관 보고체계 유지</li> </ul> <p>[조치사항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거중단 현황 파악 및 보고(위기상황별 보고체계 유지)</li> <li>· 시·군·구내 관련부서, 읍·면·동 등을 통한 현장확인 실시</li> <li>· 수거중단 공동주택, 수거중단 업체, 단지내 적치 등 기본 현황자료 파악</li> <li>· 아파트관리소 등의 잘못된 분리배출 안내 등 현장지도</li> <li>■ 수거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대응방안 수립·시행</li> <li>· (1단계) 기존업체 수거 재개 유도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파트·수거업체 간 단가조정 등 재계약 유도</li> <li>- 수거중단 업체 요구사항 등 검토·지원</li> <li>- 필요시 지자체선별장 등으로 재활용품 반입</li> </ul> </li> <li>· (2단계) 지자체 직접 수거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자체 직접수거, 대행업체·별도 위탁업체 활용 등으로 단지내 적치 재활용품 수거</li> </ul> </li> </ul>

대형 위기 상황	환경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중앙 대책상황반」 구성·운영</li> <li>- 지자체 상황 파악, 유관기관 협조 등</li> <li>- 수거중단에 따른 긴급대응방안 수립·시행 총괄</li> <li>- 대국민 홍보 등 범정부 대책 수립·시행</li> </ul>
	시·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시·도 대책상황반」 구성·운영</li> <li>- 시·도내 수거중단 상황파악 및 「중앙상황반」 보고체계 유지</li> <li>- 수거중단에 따른 비상수거체계 구축</li> <li>- 관할구역 비상수거 등 홍보·계도활동 추진</li> </ul>
	시·군·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시·군·구 대책상황반」 구성·운영</li> <li>- 수거중단 상황파악 및 「시·도 대책상황반」 보고체계 유지</li> <li>- 수거중단에 따른 비상수거체계 구축</li> <li>- 관할구역 비상수거 등 홍보·계도활동 추진</li> </ul>
중형 위기 상황	시·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시·도 대책상황반」 구성·운영</li> <li>- 시·도내 수거중단 상황파악 및 환경부 보고체계 유지</li> <li>- 수거중단에 따른 비상수거체계 구축</li> <li>- 관할구역 비상수거 등 홍보·계도활동 추진</li> </ul>
	시·군·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시·군·구 대책상황반」 구성·운영</li> <li>- 수거중단 상황파악 및 「시·도 대책상황반」 보고체계 유지</li> <li>- 수거중단에 따른 비상수거체계 구축</li> <li>- 관할구역 비상수거 등 홍보·계도활동 추진</li> </ul>
소형 위기 상황	시·군·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시·군·구 상황반」 구성·운영</li> <li>- 수거중단 상황파악 및 시·도 보고체계 유지</li> <li>- 수거중단에 따른 비상수거방안 마련</li> <li>- 해당 공동주택 비상수거 등 홍보·계도활동 추진</li> </ul>

## 7. 행정사항

- 환경부 및 시·도, 시·군·구는 동 매뉴얼(안)에 따라 자체 상황반 구성·운영 등 세부 대응 매뉴얼 작성·비치
  - 상황근무자, 비상연락망, 상황반 역할 및 임무 등
- 위기 상황별 보고는 붙임 서식에 따라 시·군·구에서 시·도에 보고 후 시·도는 관할구역 상황을 환경부 「중앙 대책상황반」 으로 보고체계 유지

붙임 : 위기 상황별 보고(서식)

# 위기 상황별 일일보고 양식

## 1. 수거중단 예고 시

□ 시·도명:

□ 보고일: (0.0일, 0.0일 기준)

□ 담당자: (성명, 연락처)

시군구	공동주택 수거 일반현황			수거업체 수거중단 예고 공동주택 현황				수거중단 예고 상황			지자체 긴급대응계획	대응계획 이행 현황 (시행일)
	전체 단지수	업체 수거 단지수	지자체 수거 단지수	단지명 (주소)	세대 수	주 평균 발생량	수거 업체명	수거중단 예고품목 및 예고시점	수거중단 주요사유	수거중단 가능성		
000	000	000	000	000 아파트 (000 000)	00,000	000kg	000 (연락처)	페비닐, 페스티로폼 등 0.0일부터	해당 품목 수익악화, 업체 담합 등	높음, 보통 등	예) ▪ 지자체 직접수거(수거품목, 추 가 소요 예산·인력 계획) ▪ 민간업체 별도계약 ▪ 기존 대행업체 처리 ▪ 공동주택-업체간 중재(계약단 가인하 등 재계약 유도) ▪ 기타(자세히 기술) ▪ 조치계획 없음(사유)	예) ▪ 지자체 대행업체 활용, ▪ 별도 위탁계약, ▪ 민간업체 재협상 ▪ ..... (0.0일)

## 2. 수거중단 발생 시

□ 시·도명:

□ 보고일: (0.0일, 0.0일 기준)

□ 담당자: (성명, 연락처)

시군구	공동주택 수거 일반현황			수거업체 수거중단 공동주택 현황						수거중단 상황		지자체 긴급대응계획	대응계획 이행 현황 (시행일)
	전체 단지수	업체 수거 단지수	지자체 수거 단지수	단지명 (주소)	세대 수	주 평균 발생량	수거 업체명	단지내 적치 여부	별도 수거처리 현황	수거중단 품목 및 시점	수거중단 주요사유		
000	000	000	000	000 아파트 (000 000)	00,000	000kg	000 (연락처)	O/X 000kg (누계)	지자체 직접수거 등	페비닐, 페스티로폼 등 0.0일부터	해당 품목 수익악화, 업체 담합 등	예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자체 직접수거(수거품목, 추가 소요 예산·인력 계획)</li> <li>■ 민간업체 별도계약</li> <li>■ 기존 대행업체 처리</li> <li>■ 공동주택-업체간 중재(계약 단가인하 등 재계약 유도)</li> <li>■ 기타(자세히 기술)</li> <li>■ 조치계획 없음(사유)</li> </ul>	예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자체 대행업체 활용</li> <li>■ 별도 위탁계약</li> <li>■ 민간업체 재협상</li> <li>■ .....</li> </ul> (0.0일)